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자질을 높여 개인 및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교육원은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의2(사업) 평생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실시
-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운영
- ③ 평생교육 자료의 개발 및 관리
- ④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필요시 부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조직으로 운영관리과를 둔다.

- ① 원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평생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과(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제3장 선발 및 등록

제4조(선발절차) 평생교육원의 학습자 선발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각 과정별로 선발한다. 단,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도 있다.

제5조(등록시기) 평생교육원의 등록은 매학기 초 또는 기수별 개강식 전에 한다.

제6조(지원자격) 평생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특

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학 사

제7조(학습기간 및 일수) 평생교육원의 학습기간 및 일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학습자는 기별 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8조(설치과정 등) ① 평생교육원내에 평생교육부, 여성교육부, 미술교육부, 산업교육부, 생활체육교육부, 시민교육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두며,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3조의 학습비 등은 필요시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교과과정 및 성적평가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④ “삭제”

제9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평생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별표3, 4】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 수강생이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13조(학습비) ① 평생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교재비, 실습재료비등은 학습자 본인부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별표2)

③ 우리대학교 교직원, 재학생, 최고위관리자과정 수료생 및 기초수급대상자, 만60세이상 인자에등에 대하여 설치과정에 따라 학습비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자치활동

제14조(자치회) ①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은 수강 목적에 따른 자치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반사회적, 비윤리적 활동은 금한다.

②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단체의 대표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5.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회 계

제18조(회계연도) 평생교육원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9조(수입원) 평생교육원의 운영경비는 학습비, 교비지원금, 위탁훈련지원금(위탁훈련 시),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 평생교육원의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운대학교에서 관장한다.

제8장 기 타

제21조(위탁교육) 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운영내규) 교육과정별 운영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환 불 기 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제 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체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과정명 : 과정

(기 간) (20 . . . ~ 20 . .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박사 * *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경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별표 4】

제 호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은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운 대 학 교 평 생 교 육 원 장